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3. 1

국민권익위원회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국정과제 중심 평가로 성과창출 견인

-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 ‘정책성과·효과’ 중심 평가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창출 독려

□ 평가체계 합리화·환류 강화로 성과관리 강화

- 자체평가 세부 평가지표는 특정평가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설정함으로써 특정평가-자체평가 간 연계 강화
- 전년도 자체평가 부진과제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전체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내부위원을 포함한 자체평가위원 및 간사(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
 -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 주요계획 심의·확정,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 수행
-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성, 과제특성 등을 고려해 2개 소위로 구성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검토·심의·조사·연구를 수행
- (성과지표 T/F) 자체평가위원 중 평가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중심으로, 목표치 검토·평가 및 성과지표 신규개발 및 수정 지원

□ 평가방법

- 과제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와 국민 평가결과를 종합
 - 자체평가위 소위원회별로 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하여,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심의결과에 국민참여 정책평가(설문조사) 결과를 가점으로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제별 평가점수, 평가등급(순위) 등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 및 최종 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 3개 평가항목, 9개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주요 내용
정책설계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과제 추진계획의 충실성 ○ 과제수단의 적합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산출·결과 지향성, 측정가능성, 복합지표 여부 등
정책집행	1. 추진계획 준수 정도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 준수 여부
	2. 이행 노력도	○ 투입 노력 ○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 협업 노력
	3.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4. 기관장 노력 지원 정도	○ (부)기관장 현장방문, 정책소통, 국회설명 등 지원 정도
정책성과 및 효과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목표치 달성 정도
	2. 정책효과	○ 당초 의도한 효과 ○ 장기적 효과
	3. 정책환류 성과	○ '21년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 '22년 중간점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2. 평가결과

(1) 총 평

□ '22년도 총 24개 정책부서 중 24개 정책부서의 1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1등급 1개(7.1%), 2등급 2개(14.3%), 3등급 2개(14.3%), 4등급 4개(28.6%), 5등급 2개(14.3%), 6등급 2개(14.3%), 7등급 1개(7.1%)로 나타남
- 2등급 이상 과제는 'Ⅱ-2-②.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Ⅰ-1-①. 부패방지 정책·제도의 재정비', 'Ⅰ-2-①.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이며, 6등급 이하 과제는 'Ⅰ-1-③. 청렴교육 확대', 'Ⅰ-2-③. 공공재정 누수 방지', 'Ⅰ-2-②. 부패·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공직자들의 지위·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시행(5.19), 부정청탁금지 직무 확대 등 반부패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개발·전파 등 공공·민간부문 반부패 활동을 촉진하였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음

- 또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긴급구조금 제도(先지급·後심의) 도입, 포상금 확대(최대 2억→5억, 7.19.) 등을 통해 부패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반기별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의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현황에 대한 '22년 상반기 점검결과 공공재정 총예산 263조 중 411억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96억원을 부과하였음

□ 이와 함께,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음

-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하여 1,929건을 상담·해결하였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 179건을 해결하여 49,700여 명의 주민 숙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다시 정책으로 환류하는 ‘국민생각함’을 활성화하였고,(국민생각함 참여자 : ‘21년 44만명 → ‘22년 52만명)
-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 등을 관계기관에 예보(15회)하여 소관 기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 하고, 사회안전망 등 사회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하였음

□ 총 14개 관리과제의 50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6.2%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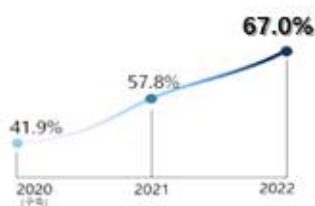
- 4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8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이첩·송부율, 공익침해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해결률은 취하 종결사건의 증가로 인해 미달성되었고,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 노력도는 신고자 1인의 다수 신고로 통계가 왜곡되어 실적이 낮게 나타났고,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책제안 건수, 내부 공익신고 비율은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미달성되었고,
 - 부패·공익신고 보상사건 평균처리기간은 보상금 지급신청이 증가 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증가하여 미달성된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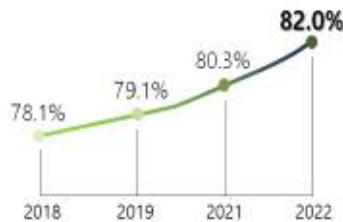
□ ‘Ⅱ-2-②.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Ⅰ-1-①. 부패방지 정책·제도의 재정비’, ‘Ⅰ-2-①.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Ⅱ-2-②.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새정부 중점 국정과제 등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범정부 정책화 지원

민원분석시스템 공동활용률



민원분석자료 이용자 만족도



국민의 소리 활용률



-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 등을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소관 기관의 대응책 마련 촉구(15회)
- 빅데이터 보유기관 및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업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 (Ⅰ-1-①. 부패방지 정책·제도의 재정비) 국가청렴도 지속 향상을 위한 체계적 대응,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시행 등 반부패 정책 강화

- 청렴도 저조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적기에 지원하고,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의 이행력 강화 등 반부패정책 내재화
- 맞춤형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총 6회)를 통한 현장 중심 정책 추진

○ (Ⅰ-2-①.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법령 개정을 통한 신고자 책임 감면 개선, 구조금 확대, 포상금 확대 등 신고 보호·지원 강화

- 신고자 보호·지원 체계의 도약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신고자 보호·보상사건의 적극적 해결로 안심 신고 환경 조성

* 직원 불법도청 신고자 해고 취소 결정 등 보호사건 244건 처리

* 보상금 55억원(3,047건), 포상금 5.7억원(24명), 구조금 0.3억원(7명) 지급

(3) 개선·보완 사항

□ 'I-1-③. 청렴교육 확대', 'I-2-③. 공공재정 누수 방지', 'I-2-②. 부패·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 등 3개 과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I-1-③. 청렴교육 확대) 고위직 교육 인원, 청렴강사 양성 수, 청렴 콘텐츠 공모전 접수 건수 등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정량지표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교육만족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고,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와 대응 내용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I-2-③. 공공재정 누수 방지) 과제목표가 '공공재정환수법 실효성 및 이행력 제고'인지, '공공재정 누수 방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 정책 수단인 실태점검이 정책목표화되어 있어 과제목표 체계를 점검할 필요

- 성과지표 중 '이행실태 점검결과 언론보도율'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I-2-②. 부패·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 '부패·공익신고 사건 관리 강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 '청렴포털 고도화 및 이용 확대'라는 정책수단이 정책목표화되어 있어 과제목표 체계를 점검할 필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 필요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평가항목의 실적으로 제시한 집중신고 운영 등은 세부 측정기준과 무관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I-1-①. 부패방지 정책·제도의 재정비	2등급
I-1-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	4등급
I-1-③. 청렴교육 확대	7등급
I-1-④. 민간·국제분야 협력 강화	4등급
I-2-①.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2등급
I-2-②. 부패·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	6등급
I-2-③. 공공재정 누수 방지	6등급
I-2-④.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3등급
Ⅱ-1-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	3등급
Ⅱ-1-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처리	5등급
Ⅱ-1-③. 국민 중심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4등급
Ⅱ-2-①. 국민 중심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	4등급
Ⅱ-2-②.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1등급
Ⅱ-2-③.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5등급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부패방지 정책·제도의 재정비	2등급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가청렴도의 지속 향상을 위한 체계적 대응 전략 추진
 -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향 마련(2.24)
 - 국가청렴도 개별지수 관련, 국내·외 소통 및 홍보 다각화
 - * 평가기관 방문(5·9월), 주한상의 간담회, 애널리스트 정책홍보 등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2.10)하여, '21년도 CPI 결과 분석 및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전략 등 모색
- 국민이 공감하고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청렴수준 종합 평가제도'로 20년만에 전면 개편하여 안정적인 평가 시행
 -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을 모두 반영하는 종합 평가 실시

< 기존 >

청렴도(10점 만점) 부패사건 감점 포함 ↓ 개별 측정·발표
부패방지 시책평가 (100점 만점)



< 개편 >

종합 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 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 서의 부패인식·경험	*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 시책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 징계·감사·수사 등 적발된 부패사건 통계	

- 청렴도 저조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적기에 지원하고,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의 이행력 강화 등 반부패정책 내재화
 - 청렴도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대안 제시(23개 기관, 1~8월)
 - 부패방지교육 이행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22.1. 법 개정, '22.7. 시행령 개정)
 - * 교육 이수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의무교육 독려

- 맞춤형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총 6회)를 통한 현장 중심 정책 추진
 - '22년도 주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관유형별로 안내·제공
 - * 중앙행정기관(1.20), 광역지자체(1.21), 기초지자체(1.25), 공직유관단체(1.26)별 맞춤형 자료 전달, 제도안내 및 질의응답으로 권익위 반부패 정책·제도의 이해도 증대
 - 민선 8기 구성('22.7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대상 회의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한 반부패 정책의 현장 이해도 제고
 - * 광역(9.14) 및 기초(9.16) 지자체 감사관 대상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자치법규 부패요발요인 집중점검 등 안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반부패 5개 법률과 제도가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재화 필요
 -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혼란을 줄이고, 자율적 청렴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저조기관 대상 심층적 방식의 청렴컨설팅 지원
 - ※ 대상기관 선정(2월) → 청렴도 저조원인 분석(2~5월) → 심층 조사(6~7월, 신규 도입) → 맞춤형 대안 도출(7~9월) → 성과 공유(9~12월)
-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명확화(2월) 및 교육 여건 취약기관 대상 지원책 마련
 - ※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화, 운영 부진기관 대상 후속조치 강구, 신규 지정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교육 지원 등

-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 개편된 청렴수준 종합 평가제도에 따른 업무 추진과정의 동기 부여를 위해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 당초,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오스트리아 소재)의 특별과정 개설을 통해 청렴 선진국의 우수시책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상황으로 운영하지 못함
-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IACA 반부패 교육훈련과정 운영 추진('23. 상반기 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52	○ 과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충실히 작성하였음 ○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개최 횟수에 대한 성과지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등 참여기관 확대에 따른 목표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집행 (25)	20.91	○ 법령개정 및 종합청렴도 개편을 통한 투입실효성 강화와 대상기관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평가제도 효율성 증대, 민간 및 학계를 포함한 다각화된 협업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평가대상기관 확대에 대응한 평가기관 유형화에 따른 평가모형 구분은 평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의견 반영 등 적극적 대응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감사관 회의 주재 등 기관장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음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3.50	○ 국가청렴도(CPI) 순위의 지속적 상승 등 반부패 정책 및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 - 다만, CPI 지표와 BRM, IMD 등의 지표 간 위계성을 고려하여 차년도 CPI 향상 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CPI를 중심으로 각 지표별 반부패 정책 및 제도와의 매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교육 이수 공직자 및 전문가의 공정성 인식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교육 이수자 중심의 양적 지표와 함께 부패방지 교육 증가에 따른 질적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및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부패예방시스템 정착

- 공직자의 사익 추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필요한 세부 규정 제정 완료
 -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2.18.)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정(2.18.),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4.25.)
- 법 적용 대상 200만명 공직자 및 전 국민이 법 시행의 의의, 주요 내용 등을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추진
 - * 위원장 등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대면·비대면) 직접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배포(3.31)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22.4월) 등

○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를 통한 반부패 규범 실효성 제고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교도관 업무 등을 추가하여 규범력 강화('22.6.8.시행)

▲ 견습생·장학생 선발 ▲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
-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자료 열람 및 이첩 금지 명시 등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22.6.8.시행령 개정)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봉인·보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절차 규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제고('22.6.8. 신고지침 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행동강령 상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정비('22.6월)

○ 실태점검 등을 통한 각급 기관의 규범 집행 책임성 확보

-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제도 운영 현황 조사 및 법 위반 신고 부적절 처리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22.3~5월)
- 대선(3.9) 및 지방선거(6.1)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청탁, 사익추구 등 공직자 행위규범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22.2~4월)
-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이행현황을 점검, 미이행 기관에 대한 추가 이행 독려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유권해석, 교육, 실태조사, 법 위반 신고 처리, 법령 정비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확보하고자 관계기관 협의 노력('22.3.~)을 하였으나, 전담조직이 마련되지 못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발생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노력 계속

- 청탁금지법의 현실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법령이나 해석기준을 보완할 필요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유권해석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86	○ 과제수행시에 주로 교육, 신고조사·처리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각 수단들의 효과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투입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발 관련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2. 정책집행 (25)	18.91	○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TF조직 운영과 홍보 등에 노력을 하였음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과의 중복을 해소하려 노력함 - 다만,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 제도개선 이행 점검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언론인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 성과, 공직자 행위규범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성과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필요 ○ 이해충돌이나 청탁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특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필요
3. 정책성과 및 효과(60)	49.49	○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례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례들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나 유사분야에 대한 교육,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청탁금지법의 위반 신고건수가 줄고 있는 것은 법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청렴의식 확산
 - 청렴윤리경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및 맞춤형·공연형·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 * (청렴윤리경영) 42회, 6,836명 / (이해충돌방지법) 116,350명 / (지방의회) 44개 지방의회, 1,693명 / (고위직, 신규자,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39회, 3,027명 / (공연형) 56회, 52,893명 / (찾아가는 청렴교육) 195개 공공기관, 12,775명 / (사이버교육) 259,551명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7종) 및 강사 양성(1,437명)을 통한 청렴교육 지원
- 반부패·공정사회의 토대 강화를 위해 청렴교육의 전방위적 확대
 -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2개 운영, 894명 수료
 - * ①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②대학협업 청렴강좌
 -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렴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운영(45회, 5,673명), ‘맞춤형 청렴교육 체험프로그램’ 18종 개발
 - (일반국민 대상) 국민이 청렴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청렴콘텐츠 개발(3종), 청렴-MOOC 운영
 - * 5개 분야(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공모에 총 1,907건 접수, 50편(분야별 10편씩)을 수상작으로 선정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4회, 14개국, 103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고위직 교육 인원, 청렴강사 양성 수, 청렴콘텐츠 공모전 접수 건수 등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정량지표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교육만족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고,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성과관리 측면)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와 대응내용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청렴교육 자체는 중요한 장기적 효과를 도출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장기적 효과를 기술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교육 수용률
 -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예산상 제약으로 수요 대비 수용률이 15.5%*에 불과하여,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 '22년 총 290개교 신청, 45개 학교 대상 운영
 -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상 제약으로 청렴연수원 자체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을 부득이 중단하여 사이버교육 수요 충족에 한계

☞ '23년에는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청렴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수용률을 높이고자 함

- 다양한 청렴윤리경영교육 이러닝 과정 및 교육콘텐츠 개발 필요
 - 교육과정 운영 첫해로 원내·방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다양한 이러닝 과정 및 교육콘텐츠 제작이 부진하여 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60만)의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23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청렴윤리경영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조직 내 청렴윤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1.94	○ 추진계획 미준수가 존재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정할 필요(근사치 등을 활용하여 이수자 수 등의 목표치를 천명 단위로 제시)
2. 정책집행 (25)	17.37	○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 규정(훈령) 개정'이 미준수인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필요 ○ 사업이관(청렴윤리경영교육)을 통한 예산 확대 외의 예산 및 인력확보, 법개정 노력 등 필요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대상기관을 보다 넓게 유형화(정부/지방정부, 의회, 교육직관, 정부산하기관, 기업체 등)하여 관리할 필요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모니터링 및 갈등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대응내용 위주이며, 실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는지,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와 대응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보완 필요
3. 정책성과 및 효과(60)	46.73	○ 정책효과의 근거로 정량적으로는 교육만족도, 정성적으로는 교육소감 등을 제시하였음 - 이러닝 청렴교육 확대,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있어서 정책효과의 제시에 있어 output(산출) 보다는 outcome(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장기적 효과의 기술에 있어서 청렴교육 자체는 엄청난 장기적 효과를 도출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장기적 효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 경제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22년 4건의 반부패 정책 제안

■ 국회 청원제도 활성화방안 논의

▲ ‘국회동의청원의’ 요건 완화 및 실효성 강화, ▲ 전자청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개선방향 논의

▲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 전환,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활성화 방안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 수급자별 표준화된 관리지침 마련, ▲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 학생참여를 통한 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논의

▲ 학운위 구성원으로 학생위원 참여보장, ▲ 학생대표의 심의 권한 점진적 확대

- 청렴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 모니터단’ 259명을 선발, 국민참여 모니터단 토론회(1차 8.26, 2차 10.27) 개최

○ 공기업 등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도입 및 시범운영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CP)’ 가이드라인 개발·배포(6.30)

*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및 UNODC·OECD 등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분석, 정책 간담회(2.23)·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5개 대분류-12개 중분류-45개 지표-190개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 20개 공공기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컨설팅(1차:4.20~5.4, 2차:10.24~28), 심사(11.1~12.7) 등을 통해 CP 운영 지원

* 1차 시범운영기관 : 제도 개발 초기부터 참여(‘21.8~)한 한전, LH 등 6개 공기업

** 2차 시범운영기관 : 공기업 4개 기관, 준정부기관 6개 기관, 지방공사공단 4개 기관

○ 주요 반부패 국제회의체의 반부패 논의 적극 참여 및 성과 인정

- G20 정상회의 부속서에 한국의 반부패 국민참여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모범사례로 소개(11.16)

G20 정상회의 부속서 수록 내용

- ▶ **국민참여 우수사례**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국민대상 설문조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패공약침해 신고 시스템
- ▶ **반부패교육 우수사례**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의무교육 ▲유아를 위한 청렴 인형극 ▲윤리와 도덕 가치가 포함된 초중등 교육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개발·제작한 청렴 보드게임 ▲청렴 가치가 내재된 웹드라마



-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협의단, 국제반부패 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등 주요 반부패 국제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신고자 보호 강화·청렴포털 등 한국의 반부패 추진 성과 발표
- UNDP와 협업을 통한 반부패 정책 개도국 공유사업 실시로 국제 사회 기여

*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코소보·몰도바 등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 공유하고 그 성과를 피드백(6.2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3기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에서 활발한 안건 논의 미흡

- ☞ 소규모 실무분과회의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민관협의회 대면회의로 위원 간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서면 의결 방식을 병행하여 정책 제안 수를 높이하고자 노력

○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청렴윤리경영제도 도입기관수나, 국제반부패 라운드 대응 건수는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기에는 단순한 지표

- ☞ 투입지표는 삭제하고 결과지표 등의 방식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82	○ 단순 투입지표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지표는 가급적 제외할 필요 - 국제 반부패라운드 대응 건수의 경우는 단순히 회의 참석 횟수로 표명되지 않도록 성과지 표명을 수정할 필요 * 국제 반부패라운드 회의 제안/발제비율 등
2. 정책집행 (25)	20.00	○ CP 등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적절한 인원배치 및 신규예산 투입은 주요성과라 할 수 있음 ○ 일하는 방식 개선에서 국민참여 모니터단을 통해 정책 안건을 발굴, 협의회 안건으로 연계한 구체적 실적을 제시할 필요 ○ 협업 노력 부분에서도 경제단체 실무협의회 구성 등은 중요 성과이나 구체적 협업내용을 제시할 필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분과회의, 청렴윤리경영 CP 컨설팅, 모니터단 토론회, 국민생각함 설문 등 대부분 내용이 타 평가항목(일하는 방식 개선, 협업 노력) 내용과 중복 기술되어 있음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안건을 나열한 것은 '갈등 발생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평가 항목의 세부 측정기준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3. 정책성과 및 효과(60)	49.17	○ 공공기관 주요 변화 사례 등 전반적으로 정책 효과를 잘 분석하여 구체적 사례로 잘 제시 하고 있음 - 다만, 청렴윤리경영 제도 효과성 인식도를 꾸준히 측정하여 대상기관의 수요를 분석, 지속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할 필요 ○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 요구에 '신규전문위원 40% 반영' 사항만 적시하였으나 구성의 다양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 기술 필요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령 보완을 통한 신고자 보호·지원 확대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신고자 책임감면 개선*, 구조금 확대**, 포상금 확대*** 등 부패신고 보호·지원 강화

* 신고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징계뿐만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 전) 원상회복 관련 쟁송 → (개정 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

***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7.19.)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고자 보호 하위법령 정비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 처리 반영, 공익신고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지원범위 확대, 통지 규정 보완

○ 신고자 보호·지원 체계의 도약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신고자 보호·보상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4.27), 연구회(4회) 등 개최

* 일원화 방안 마련(11월) 및 법제처 조정지원 후 '23년 상반기 입법 추진

구 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	×	×	×	×
책임감면	일부만 규정	○	일부만 규정	일부만 준용	○
이행강제금	○	○	×	○	○
구조금	○	○	×	○	○

- 신고자 보상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시행령 개정 추진

* 반부패 5개 법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통일하고, 지급 상한(30억)을 폐지

○ 신고자 보호·보상사건의 적극적 해결로 안심 신고 환경 조성

- 직원 불법도청 신고자 해고 취소 결정, 갑질 신고자 징계처분 취소 등 보호사건 244건 처리('11~'21년 평균 대비 2.6배 증가)

- 신고자 비밀보장 교육 강화, 신분공개자 고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신고자 신분 유출사건 14.8% 감소
- 보상금 55억원(3,047건), 포상금 5.7억원(24명), 구조금 0.3억원(7명) 지급

○ 부패·공익신고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 수요자 특성에 따른 내용·강사·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진행
 - * 신고 접수·처리 담당자(신고자 비밀의무를 중점적으로 교육), 조사관(신고자의 신고 경험, 신고자 입장의 보호·보상 중요성)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물 배포, 신고 및 보호·보상 사례 카드뉴스, SNS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은밀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현재 법령에서 포섭이 불분명한 불이익조치 발생
-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법률 확대 논의와 더불어 신고자 불이익조치의 발생 양태에 대한 검토 필요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불이익조치 개념을 명확화('23.12월)

- 부패·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신고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22. 10. 14. 신고자 지원단체 토론회)

-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감면 강화 필요

☞ 일정한 요건 하에서라도 신고자에게 필요적 책임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및 신고자 여부를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23.상반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3.04	○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제도 정비”, “제도 운영”, “제도 홍보 및 교육” 등의 체계를 세우고 그에 따라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정책집행 (25)	21.69	○ 과제추진계획이 분기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음 ○ 인력투입, 법령개정, 지침정비, 일하는 방식 개선,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과제 추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 노력”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까지도 상세히 기술되었음 - 다만 일하는 방식 개선의 경우 법률 상시 검토체계 및 멘토-멘티제도가 상시적인지, 임시적인지, 즉 운영방식에 대한 언급이 필요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와 관련한 여론 동향을 민첩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부각되었음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2.85	○ 미달성 지표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히 내부 공익신고 비율은 조직 내 부패를 적발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건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예컨대, 공익신고제도의 홍보 부족 때문인지, 신고자의 신원 노출 및 불이익의 위협 때문인지, 아니면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로 조직문화가 개선된 덕분인지 등)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표사례, 주요 사례 등을 적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음 ○ 장기적 효과의 경우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일원화 입법 추진을 통해 어떠한 “장기적 효과”가 기대되는지 보완 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패·공익신고의 이첩·송부율 및 적발률 관리를 통해 사건 관리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사건에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사건 처리
 - * 사건초기단계에 관련사건의 중요도를 신속 심사,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사건에 조사인력 2개팀 이상 집중 투입
 - 부패신고에 대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도입·시행(2.18.)에 따른 사실 확인 적극 활용(피신고자 사실확인 5건 중 3건 송부)
 - 부패신고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시행(7.5. 시행)
 - 이첩·송부건의 사후관리 내실화 및 조사·수사기관과의 협력 등 추진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체계 정비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화 규정 신설, 취업제한대상·기관 정비, 취업제한기산점 구체화 등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
 - '22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 점검 실시
 - * '20년 귀속기타소득 실태점검(9명 적발 2명 고발 등 조치요구)
 - '22년 상·하반기 실태점검(22명 적발, 17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이용 확대
 - 공익신고의 비실명 대리 신고를 오프라인(서면 등) 뿐만 아니라, 청렴포털을 이용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일(5.19.)에 맞춰 공직자 의무신고, 대국민 위반신고 서비스를 개통,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부패·공익신고 제도 강화의 주요 성과로 제시한 것이 '부패·공익신고 주요사건의 이첩·송부율 증대'인데, 공익신고 사건의 경우 전년보다 이첩·송부율 감소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 필요
- (성과관리 측면) '부패·공익신고 사건 관리 강화',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실태점검', '청렴포털 고도화 및 이용 확대'라는 정책수단이 정책목표화되어 있어 과제목표 체계를 점검할 필요
 - 비위면직자 모니터링, 집중신고 운영은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평가항목의 세부 측정기준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실태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 교육 확대 필요
 - 퇴직전 소속 공공기관에서 취업제한기관 중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비위면직자에 대한 온정주의 등으로 검토가 미흡한 사례 발생

☞ 공공기관의 업무관련성 검토 등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추가 검증을 위해 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강화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교육 확대

- 청렴포털 사용기관 증가 추세에도 체계적인 자료입력 및 관리 등을 위한 근거가 미흡해 운영 및 활용의 한계 노출

☞ 신고자 비밀보호, 반부패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정보의 공유·공개활용 등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청렴포털로 통합 가속화 노력 필요
* 청렴포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제도적 기반 마련(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53	○ '부패·공익신고 사건 관리 강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 '청렴포털 고도화 및 이용 확대'라는 정책수단이 정책목표화되어 있어 과제목표 체계를 점검할 필요
2. 정책집행 (25)	17.75	○ 이첩·송부사건 수사결과 협조요청 결과, 실제로 수사결과 미회신 건이 줄었는지 구체적 성과를 기술할 필요 ○ 공익신고 처리 협업 사례 중 대한약사회와 간담회 외에 공익신고 관련 단체 등과 추가적인 협업 노력이 있는지 제시할 필요 ○ 비위면직자 모니터링, 집중신고 운영은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평가항목의 세부 측정기준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 '갈등발생 예방/해소' 항목에서 정책추진시 나타나는 갈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3. 정책성과 및 효과(60)	48.69	○ '공익침해 신고사건 이첩·송부율'의 경우, 외생요인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필요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포털 도입비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 필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 필요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공재정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국가·지자체 수입의 회복·증대
 - 반기별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의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현황 및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 실태점검
 - * '21년도 점검 결과, 공공재정 총예산 221.2조 중 957억원 환수, 제재부가금 99억원 부과
 - * '22년도 상반기 점검 결과, 공공재정 총예산 263조 중 411억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원 부과
 - '21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후속점검('22.3~7월)을 통한 공공재정 환수제도 정착 지원
 - * 총 31억원 추가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22.8월)
- 법령개정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적극 대응
 - 부정수급 방지 강화를 위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오지급 환수 시 이자부과 면제 등 다수 개정사항을 발굴하여 법률 개정 추진
 -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6월), 규제심사 완료(~10월), 법제처 심사중
 -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 담당자의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22.5월)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사건 적극 처리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654건 처리(이첩 13건, 송부 433건, 종결 208건)
 - * 전년대비 처리기간 21.7일 단축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2.5.16. ~ 8.16., 3개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법령개정, 예산증가, 인력투입, 관계기관 협업 노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업기관, 협업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성과관리 측면) 과제목표가 ‘공공재정환수법 실효성 및 이행력 제고’인지, ‘공공재정 누수 방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 정책수단인 실태점검이 정책목표화되어 있어 과제목표 체계를 점검할 필요
 - 성과지표 중 ‘이행실태 점검결과 언론보도율’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대상기관 제한
 - '22년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집합 교육은 하반기 연 2회 실시하였고, 컨설팅 대상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 대면 집합 교육을 지방 권역별로 실시하는 등 횟수를 늘리고, 공공재정환수제도 맞춤형 컨설팅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목표 미달성
 - 신고센터 사건 접수건수는 601건으로 전년대비 28.5% 감소했고, 신고자 취하로 인한 종결은 83건으로 전년대비 38.3% 증가하여, 외생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첩·송부율 달성이 곤란

☞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종결사건 포함 여부 및 목표 설정 수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사건 조사 노력도 측정 정확성을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1.28	○ 과제목표가 '공공재정환수법 실효성 및 이행력 제고'인지, '공공재정 누수방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책수단인 실태점검이 정책 목표화되어 있어 과제목표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결과 언론보 도울의 경우 대체지표 개발 필요 -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SNS 등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한 홍보, 소통방법 발굴 필요
2. 정책집행 (25)	18.59	○ 법령개정, 예산증가, 인력투입, 관계기관 협업 노력을 위한 노력을 자세히 기재하였음 - 다만, 구체적인 협업기관, 협업성과를 명확 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 ○ 공공재정환수법 법률 개정, 고시개정 관련 내용은 '상황변화 대응 노력도' 평가항목과 연관성이 낮음
3. 정책성과 및 효과(60)	47.76	○ '신고사건 이첩·송부율'의 경우 실적치를 달성 하지 못했는데, 전년도 취하종결률이 6.8%에서 올해 12.6%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당초 목표치 설정시 취하종결 변수에 대한 3년치 평균값을 산출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목표치 선정을 위한 노력 필요 ○ 과제목표의 재설정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과제 목표-투입-성으로 명확하게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법·제도와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향상
 - 1,409개의 제·개정 법령을 입안단계에서 평가해 총 324건의 개선안을 발굴·권고해 법령 속 숨은 부패 사전제거(개선권고율은 23.0%)
 - 79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46,917개 자치법규 인사·복무, 보조금, 위탁사업 등 부패요인 1,974건(기관당 25건) 개선권고
-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을 통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제고
 - 220개 기타공공기관의 21,328개 사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과제 235개를 발굴하고 2,250건의 개선사항 권고
 - * 기타공공기관당 평균 개선권고는 10.2건이고 개선권고율은 10.5%로 전년도 준정부기관의 5.1건, 4.5%보다 2배 증가 ↑
 - 3개년('20~'22) 공공기관 사규 평가를 연도별·기관별, 업무내용별, 평가기준별로 성과를 분석하고 10대 개선과제 등 선정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1,2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태조사를 통해 총 821건 채용비리를 적발하여 징계 등 처분 및 채용비리피해자(48명) 구제 조치

구분	조사대상	채용비리			업무 부주의		
		소계	수사의뢰	징계요구	소계	주의경고	개선기타
중앙공공기관	321	10	0	10	371	156	215
지방공공기관	597	35	4	31	877	535	342
기타공직유관단체	294	2	0	2	255	83	172
합계	1,212	47	4	43	1,503	774	729

○ **국정과제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추진**

- 관계부처 설득·협의를 통해 인력 4명과 예산(114백만원) 확보
- 정책연구용역('22.8~'22.11) 등을 거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방안 및 공공부문 '공정채용 기준'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및 효율적 평가방안 모색 필요**

- 자치법규는 **14만여 개**(공공기관 사규의 3배)로 규모가 방대해 전수 평가는 담당인력, 업무여건 상 **평가의 효율성도 저하**
- 금년 자치법규 전담평가체계인 자치법규개선TF 운영이 종료되었고, 자치법규 평가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와 인식 부족

☞ 79개 지자체 평가 후 자치법규 특성과 제약요인 등을 분석해 '23년 이후 전체 자치법규 평가방향 설정

- ▲ 자치법규의 2/3를 차지하는 조례 중심 선별적 전수평가
- ▲ 조례 중 의원발의 조례, 지방의회 소관 조례, 기본·공통조례 집중 평가 등

○ **공공부문중 공직유관단체(중앙공기업,지방공기업) 외 행정기관의 공정채용 관련 사각지대 관리·감독 필요**

- 행정기관 재직자 중 공무원 채용은 인사처·행안부의 정례적 인사감사를 통해 공정채용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반면
- 행정기관이 채용하는 '**비공무원**(공무직 등 약 43만명 재직, '20.12월)' 채용의 경우 공정채용 절차를 규율하는 기준 및 관리·감독 체계 부재

☞ '23.1.1일자 위원회에 설치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공정채용 기준' 마련 및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채용관련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 추진

※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관련 공정채용 기준 관련 '22년 하반기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발주 및 연구 완료, '23년 상반기 중 공공부문 '공정채용 기준' 마련·적용(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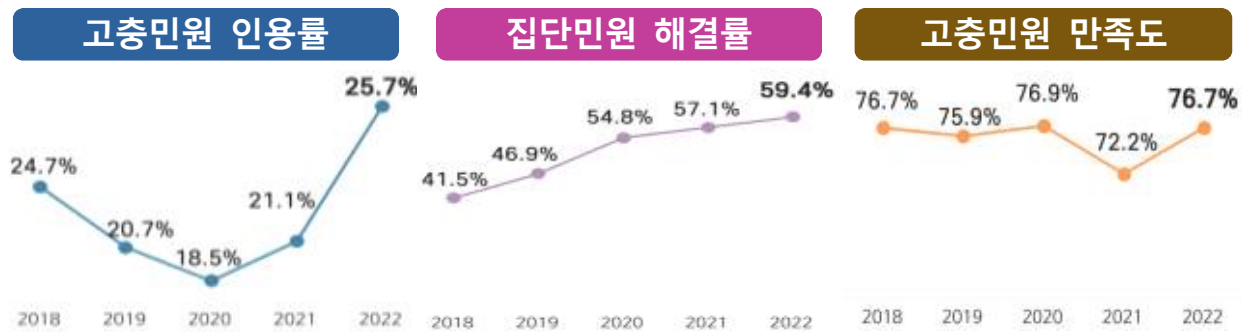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52	○ 과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수단을 제시하였고, 이를 정책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음
2. 정책집행 (25)	20.76	○ 자치법규 TF 구성 등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 과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투입노력을 상세히 설명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대상을 필수조사와 재량조사로 나누는 등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감독·수감기관 업무부담 경감 ○ 타 기관과의 협업 노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시 소관부처와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일회성이 아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공정채용과 관련하여는 기재부 및 행안부와의 협업실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보유인력의 규모에 비해 동 업무의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과 자치법규의 분야 및 부패유형별로 분류하여 실시하되,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3.43	○ 정책효과를 당초 의도한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음 ○ 법령과 자치법규 속 부패개선 효과,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한 부패제거, 공공기관 공정채용 효과로 구분하여 충실히 기술하되, 과제목표-세부전략-추진과제-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투입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일상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 고충 해소

- 농·어촌, 도서지역 등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하여 1,929건을 상담·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민원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기동해결 특별 컨설팅'을 13회 운영하여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
- 수도권 수해 피해, 이태원 참사, 장애인 인권 문제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 발생 시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10회 투입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등 장기간 표류하는 집단민원 202건을 조정·합의해결하여 68,091명 주민 숙원을 해소

○ 생활 속 빈발민원의 근원적 해소 및 고충민원 사후 관리

- 국방,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발하여 발생하는 고충 민원 과제 10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안을 권고
- 권고 불수용 사안에 대한 전수점검 및 미흡기관 수용협력 전략 회의(2회)를 실시하여 불수용 24건을 수용으로 전환

○ 효율적·전문적 고충민원 처리체계 확립

- 신규 설치 지자체에 맞춤형 인큐베이팅, 권역별 세미나·협의회 개최, 개별 컨설팅 등 적극적인 설치·운영 노력을 통해 시민고충 처리위 설치 지자체가 70개로 증가('22년 8개 신규 설치)
- 국방·경찰·기업 분야 유관기관(경찰청, 국방부)과 업무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전문성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지연

- 보다 효율적·전문적인 집단민원 조정을 위해 관련 시스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제정안 2건은 법제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21.2월부터 약 2년간 계류상태)

☞ 조속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언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유관 단체 등을 상대로 입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지속(~'23년 상반기)

○ 고충민원 사후관리 관련 보고 일정 지연

- 상반기 대선 후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중앙부처 업무 과부화로 이행점검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다수 중앙부처의 요청에 따라, 중앙부처에 대한 서면·현장 이행점검 일정이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후속 단계인 차관회의 보고 일정까지 다소 지연됨

☞ 내년에는 연초 계획한 대로 사후관리 단계별 일정을 소화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업무의 계획 대비 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점검(연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3.29	○ 코로나 19 시대에 사회적 갈등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상황인식이 적절하고 목표설정 및 다양한 수단 동원 측면에서 노력이 돋보임 ○ 집단민원조정법이 실제 법률 제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좀 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2. 정책집행 (25)	20.03	○ 고충민원 권고 수용현황 차관(국무)회의 보고 미준수 ○ 법령과 지침을 개정 노력은 의미가 있으므로,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전후를 비교하고, 개정 배경을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익위와 고충민원 협업 사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대의 근거가 되므로 협업의 성과와 사례수를 표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겠음 ○ 집단민원조정법의 입법 여건 및 법안의 미비점과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갈등해결에서 완화노력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은 돋보이나,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갈등이 완화되었는지 설명이 더 필요함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3.34	○ 고충민원 인용률, 집단민원 해결률, 고충민원 만족도 등 각종 지표들이 전년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정책수단과 정책성과 및 효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적절히 기술하였음 - 다만 인용률 향상의 경우, 정량적으로 성과라 볼 수 있으나, 향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숫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이후 확대에 대해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0.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 번에 한 곳에서’ 민원상담 해결률 제고

- 민원상담 처리 31,868건 중 27,765건(87.1%) 상담해결
- 상담해결 27,765건(87.1%), 기관안내 2,297건(7.2%), 민원신청(전환) 778건(2.4%), 상담취하 등 1,028건(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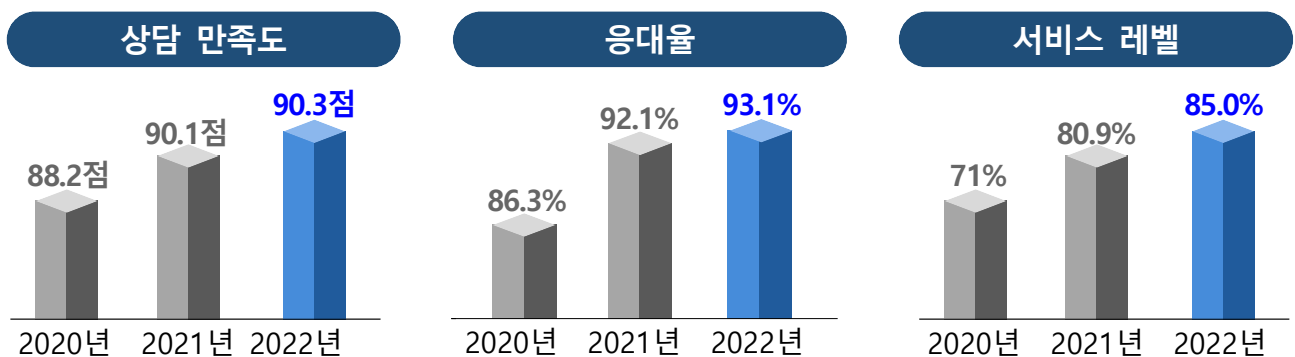
* (빈발상담 내용) 육아휴직, 연차 사용, 부당 해고, 부동산 대책관련 다주택자 취득세,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매각 등

○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 현장방문 및 기관간 의견조화,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다수기관 복합민원 처리

구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 운영(35건)		
		합의 해결	검토 후 종결	협의진행 중
건수	1,219	23	10	2

○ 국민콜110 상담서비스 국민만족도 제고



* 응대율 : 상담사 연결 신청을 한 콜 중 상담사와 연결이 이루어진 콜의 비율

** 서비스 레벨 : 총 응대콜 중 20초 내에 상담사와 연결된 통화의 비율(미국 퍼듀대학 권고치 80%)

- 多빈도 상담, 직접상담 가능한 문의를 분석·유형화하는 등 4,533건의 상담DB를 보완
 - 상담업무의 전문성 및 상담품질 제고를 위해 상담사 대상 업무 교육 및 상담스킬 등 전문교육의 주기적 실시
 - 범정부 AI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 * 2023년도 구축사업예산 114억원 확보(6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해결률 목표치 미달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필요(성과지표 재정의, 목표 상향 등)
 - 미해결 상담 건수를 대상으로 미해결 원인을 중심으로 분류해 볼 필요
 - 민원상담 분야에서 전년에 비해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술하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
- (성과관리 측면) 온라인 상담해결률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와의 연계성이 부족
 - ‘갈등발생 예방/해소’ 평가항목에서 구체적인 갈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
 - 여러 부처 공무원의 협업으로 종합상담 기능을 활성화한 성과, 투입 노력 확대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우수성과를 강조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고충민원 제기 또는 각 부처 등에서 직접처리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성격의 민원으로 인하여 상담관들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상담해결률 목표 미달

- ☞ 사인간의 권리관계 관련은 표준답변안을 마련하여 상담관들에게 공유
 - 직접처리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성격은 일반상담총괄과에서 전담하여 현장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처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75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해결률(%)' 지표에서 '상담해결'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상담해결로 분류되지 않은 미해결 민원에 대한 분석 후 아래의 상담결과 유형을 더 세분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를 토대로 온라인 상담해결률 목표치를 더 상향시킬 수 있을 것임
2. 정책집행 (25)	18.40	○ 추진계획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별(또는 과제별)로 유형화하여 기술할 필요 ○ 투입노력,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협업 노력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되면 좋겠음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과 관련한 기술에서 충실한 답변 제공 관련 내용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평소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평소 업무 절차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갈등발생 예방·해소와 관련한 기술에서 구체적인 갈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
3. 정책성과 및 효과(60)	48.52	○ 미달성 사유를 수치 등을 포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언론 보도,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 민원상담 해결률에 대한 시계열 분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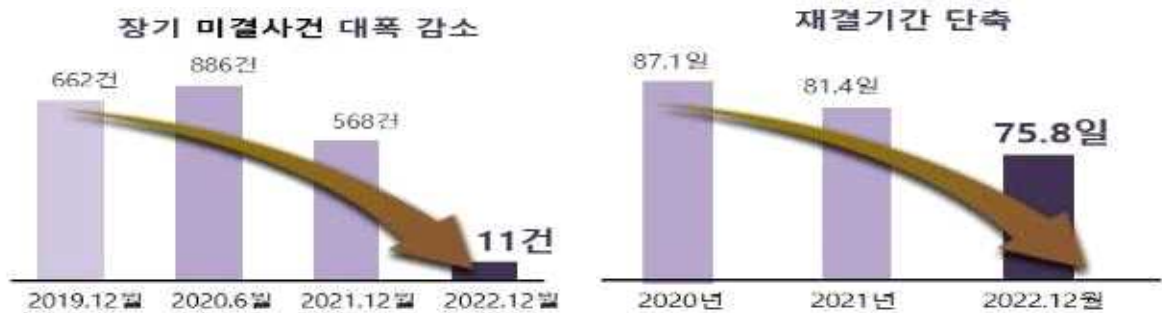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6

(1)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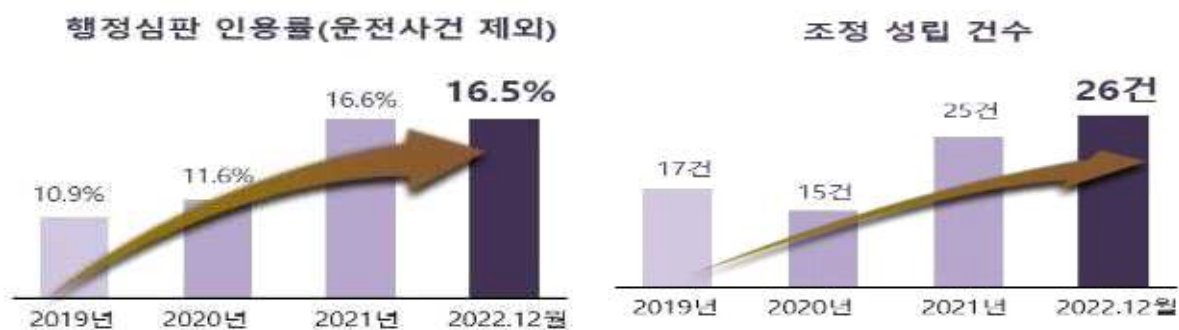
□ 주요성과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장기미결 사건 감소 및 재결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 ('21년 568건 → '22년 11건)



- 행정심판 사건 총 19,417건을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401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인용률 16.6%)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국정과제)

- (정책연구용역) 서면·대면 조사를 통해 파악한 기관별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법제·조직·행정심판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단계적 통합방안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

- (시스템 통합) '25년까지 123개 행정심판 전 기관 통합을 목표로 '22년 5개 기관을 통합하여 총 79개 기관의 시스템 통합 완료(~12월)

○ 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으로 대국민 접근성 향상

- '이지(EASY) 행정심판' 리걸테크(LegalTech) 시스템 구축·개시(12월 서비스 개시)를 통한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성 개선
- 행정심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법정 서류(청구서와 30여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 해소
-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간단한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무엇을 주장하고(청구인 주장), 무엇을 준비해야(증빙자료) 하는지 등을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지(Easy) 행정심판' 플랫폼 제공
- * '행안부 주관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기관 중 1위 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2년에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 제도화 추진은 미흡

☞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특별행정심판의 단계적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안 법제화 추진 필요('23년 법제화 추진)

- 현행 행정심판법의 내용만으로는 행정심판 당사자의 심리 지연·방해행위 대응에 한계 존재
-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22.2.11)하고 그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리자료 제출 의무화' 등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제도화 추진은 미흡

☞ 신속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對 국회 활동 강화,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필요('23년 법제화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32	○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증가율은 초기에는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하나, 대상기관의 절반이상이 이용기관인만큼 증가율보다는 향후 대상기관의 이용비율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원스탑 시스템 구현 계획 등 사업과 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짐
2. 정책집행 (25)	20.83	○ 과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 - 특히, 장기미결 사건 감소 및 재결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실제적 이행 노력을 진행함 ○ 행정심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인지도 조사결과를 분석했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성 미흡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장의 입법지원 활동,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음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1.98	○ 주요 사례를 통해 과제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 EASY 행정심판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국회에 대한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할 필요 ○ 행정심판에서의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집행이 그만큼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므로, 지표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사건처리율' 등을 검토할 필요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제도개선 추진

- 권익위 또는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중심 행정’ 실현(36건) * '21년 대비 4건 ↑

【 국민생각함 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된 주요 정책·제도 】



○ 각급기관 정책 과제·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 행정기관이 입안하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갈등요소를 사전에 차단(22건) * '21년 대비 7건 ↑

○ 보다 다양한 국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 구축

-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국민제안」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 및 운영 지원(6.23.~)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21년 1,074개 → '22년 1,117개)
- 국민생각함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과 청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3~11월)
- * 전년 대비 국민생각함 참여 18.2%p↑, 국민생각함 인지도 0.3%p↑(51.7%→52.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력상 한계로 국민생각함 안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미흡, 국민 안전에 대한 조회 수는 많지만 댓글 등 참여는 부족한 실정
- '22년 11월 국민생각함 참여자는 약 47만 명이나, 이 중 기관 안전에 대한 참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안전 참여자는 6.5만명(13.8%)에 불과

☞ **국민모니터단*** 을 구성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의무** 및 **우수 안전에 대한 추천 권한 부여** ('23년 6월)

* 최근 3년간 우수안전으로 선정된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모니터단을 위촉하고 활동 성과에 따라 포상 실시

- 국민생각함 메인 메뉴에는 국민생각함의 이용자를 위한 이용방법 소개나 국민생각함 안내에 대한 설명 부족

☞ 메인 메뉴에 '**소개 창구**'를 설치하고, **주요기능, 활용방법 및 국민생각함 활용 주요 사례*** 등을 게시 ('23년 6월)

* 국민생각함 홍보 동영상(총 10편),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책자, 국민아이디어를 통해 실현된 주요 정책·제도개선 성과 등을 등록 (열람 또는 다운로드기능 구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1.68	○ 기존 2개에 더하여 2023년도에는 역시 같은 객관적 지표로서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장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 분석 후 성과 지표로 추가하여 제시(=예컨대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수”)하는 방안 검토
2. 정책집행 (25)	17.92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규범적 노력과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 구축·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함 - 특히 이 부분이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기능 및 인식도 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 인증수단 확대 및 문자서비스 등 통보서비스 개선 노력도 매우 높게 평가함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항목 관련하여 상황변화 모니터링을 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각 노력별로 예컨대 어떤 현황파악이 있었는지 간략한 성과가 기술되는 것이 필요함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1.66	○ 국민제안,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정책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현재 정책·제도개선 건수(36건) 자체는 좋은 성과라 볼 수 있음 - 다만 실현으로 연결이 안되는 정책·제안에 대한 사후 관리 노력도 필요해 보임(일정 기간 후 미실현 제안 재검토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 예컨대 미해결 고충민원이나 장기미결 행정 심판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참고하면 미실현 국민제안에 대하여도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봄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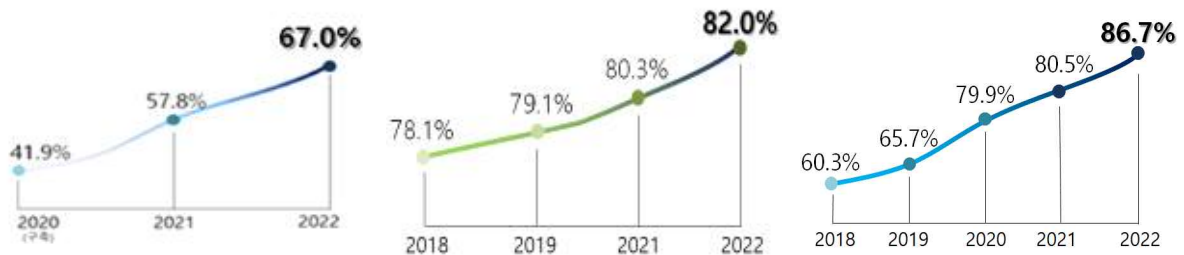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민원분석시스템 공동활용률

민원분석자료 이용자 만족도

국민의 소리 활용률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정부 정책화 지원

- 새정부 중점 국정과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강화, 자녀 양육·교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분야 기획분석 실시
- * 국정과제 :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10. 출출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복잡·난해한 사회현안 및 다양한 국민의 요구·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업 및 데이터 기반의 민원해결 체계 구축
- * 교육부, 자치단체, 국회사무처, 연구기관 등과 데이터 분석 활용 협업체계 구축

○ 민원빅데이터 동향 제공 및 기관 활용도 향상

-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 등을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소관 기관의 대응책 마련 촉구(15회)

유형	주 제	발령일
수시예보 (2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요구	6.22(해제 8.16.)
	동탄 아파트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7.13(해제 8.23.)
위험진단 (2회)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택 붕괴 위험	2.16.
	산사태 및 응벽 붕괴로 인한 2차 피해 위험	7.11.

유형	주 제	발령일	주 제	발령일
정기 예보 (11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2월	물놀이 안전사고	8월
	전회금융사기(보이스피싱)	3월	등산 사고	9월
	코로나19 재택치료	4월	산업재해	10월
	정상등교	5월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장마철 안전	6월	한파 · 난방	12월
	횡단보도 일시정지	7월		

- 「국민의 소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월간동향 구성 콘텐츠 전면개편, 주요 민원유형 및 기관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콘텐츠 다양화(4.15.)

○ 협업·개방을 통한 민원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 빅데이터 보유기관 및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업을 적극 추진하여 데이터의 이용 가치 제고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대국민 공개, 공공데이터 포털 오픈API 3종(13→16종) 추가개방('22.6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빅데이터 기반 행정 및 분석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 기술, 정책적 판단, 시각화 능력 등을 겸비한 민원분석 전문가 부재

☞ 위원회 전략방향 및 정책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채용 추진(민간경력 전문가 채용)

- 민원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도출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개선에 활용하는 노력 필요

☞ 참여 장려형 대회에서 국민들이 민원(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론화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정책개선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2.63	○ 향후 시계열 분석에서 성과지표의 차별성이 높지 않은 세부지표를 실적치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민원분석시스템 공동활용률 측정의 결과를 해당 기관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도입하면 활용률 자체의 제고도 촉진 될 것으로 보임
2. 정책집행 (25)	21.23	○ 데이터 혁신전담관 지정으로 인력 보강, 정부 교체에 따른 협조체계 구축, 민원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고도화, 공공데이터 제공 및 개방,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확장 등 여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언론·SNS 모니터링,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속적 상황파악 및 갈등 예방을 위해 활동한 사항을 인정하며, 실제로 관계기관에 즉각적 조치요구와 조치사항 확인한 점을 긍정적 성과로 평가함 - 다만, 민원분석시스템의 다각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정책 모니터링 노력을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한 것이 다소 아쉬움. 즉, 갈등발생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민원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구체적 갈등이슈의 실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후에 보완되기 바람
3. 정책성과 및 효과(60)	53.06	○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는 기존 사항과 개선점의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장기적 효과는 과제투입에 따른 직접적 성과로 간주하기 힘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주·월간 동향 「국민의 소리」 활용률, 민원분석 자료 이용자 만족도, 민원분석시스템 공동활용률 등 주요 자료와 사례를 통해 정책개선 및 데이터분석 결과활용에 대한 성과가 요약적으로 기술되어, 성과지표가 전년대비 향상 등과 같이 관리과제의 성과를 쉽게 파악 가능함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2.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부패) 불투명한 제도운영,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으로 인한 비리 행위 및 예산누수 차단 등을 위한 제도개선(12건 권고)
- (고충) 일상 속 국민불편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24건 권고)
- (이행) 촘촘한 이행관리로 이행률 향상('21년 76.6% → '22년 77.2%)

○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도개선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뒷받침

- (국가자격시험 특례제도)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실태 조사(~10월) 및 공무원·국민 설문조사 실시(9.6~30), 공개토론회 개최(11.4)
- (공직자 관사운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국·공립대 361개 기관 관사 운영 실태조사(~10월), 제도개선안 의견조회(10.25)

○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책 개선 마련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과제 중 자체 회의를 통해 후보작 선정 ⇨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우선 추진과제 선정
- 국민·전문가·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활용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개선 유도 활성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
 - 국민 고충·불편을 유발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적 업무처리 의견제시를 통한 신속한 정책 개선 및 조치 유도
 - * '22년 국민신청 접수 3,324건, 적극적 업무처리 의견제시 215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향상 측면) 제도개선 실적, 적극행정 의견제시 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향후 업무방향을 점검할 필요
 - 부패요인 제도개선이 정부신뢰도 향상에 직접적 기여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성과관리 측면) 사회적 갈등 양상(편익의 집중/분산, 비용의 집중/분산)에 따라 제도개선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달성률은 전년도 실적치 대비 개선 뿐만 아니라 현재 달성률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화재, 추락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산불·침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 필요

 국민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각지대 해소

- 현행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용범위는 행정기관만 해당되고 공공기관은 제외되어, 국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 필요

 적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설계 (15)	13.55	○ 과제수단의 선정시 조직간 협업 개념에 더하여 전문가-시민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 관점에서 제도개선의 맹점 발굴 및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과 같은 제도 공식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달성률은 전년도 실적치 대비 개선뿐 아니라 현재 달성률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2. 정책집행 (25)	18.70	○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발견되고, 제도개선이라는 과제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여건·상황변화 기능의 차별성 증진 필요 - 현재의 성과 사례들이나 집행 노력에 대한 기술을 볼 때 타 민원대응 기능과의 차별성을 찾아내기 어려움 ○ 제도개선 이행유도를 위한 대면컨설팅, 적극행정 교육 및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업무방식을 개선하였거나 신규로 추진한 것인지 확인 필요
3. 정책성과 및 효과(60)	47.93	○ 정책효과의 실질적 성과 및 성과의 제시 모두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부패방지, 고충해소, 적극행정 공히 사회적 갈등 양상(편익의 집중/분산, 비용의 집중/분산)에 따라 제도개선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도개선 실적(부패방지 제도개선 12건, 고충해소 제도개선 24건), 적극행정 의견제시 실적(202건)에 대한 시계열 자료도 함께 제시할 필요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 1.6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1-①	○ 반부패 5개 법률과 제도가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재화 필요	○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혼란을 줄이고, 자율적 청렴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연중)
	○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IACA 반부패 교육훈련과정 운영 추진(상반기)
I-1-②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이 마련되지 못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노력 계속(연중)
	○ 청탁금지법의 현실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법령이나 해석기준을 보완할 필요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유권해석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예정(연중)
I-1-③	○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교육 수용률	○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청렴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 수용률을 높이고자 노력(연중)
	○ 다양한 청렴윤리경영교육 이러닝 과정 및 교육콘텐츠 개발 필요	○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청렴윤리경영 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연중)
I-1-④	○ 제3기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청렴사회민관 실무협의회에서 활발한 안건 논의 미흡	○ 소규모 실무분과회의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민관협의회 대면회의로 위원 간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서면 의결 방식을 병행하여 정책 제안 수를 높이고자 노력(연중)
I-2-①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은밀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현재 법령에서 포섭이 불분명한 불이익조치 발생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불이익조치 개념을 명확화(12월)
	○ 부패·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신고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	○ 일정한 요건 하에서라도 신고자에게 필요적 책임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및 신고자 여부를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6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2-②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실태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 교육 확대 필요	○ 공공기관의 업무관련성 검토 등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추가 검증을 위해 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강화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교육 확대(연중)
	○ 청렴포털 사용기관 증가 추세에도 체계적인 자료입력 및 관리 등을 위한 근거가 미흡해 운영 및 활용의 한계 노출	○ 청렴포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제도적 기반 마련(12월)
I-2-③	○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대상기관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 대면 집합교육을 지방 권역별로 실시하는 등 횟수를 늘리고, 공공재정환수제도 맞춤형 컨설팅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연중)
	○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목표 미달성	○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종결사건 포함 여부 및 목표 설정 수준을 재검토하여 신고사건 조사 노력도 측정 정확성을 제고(연중)
I-2-④	○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효율적 평가방안 모색 필요	○ 79개 지자체 평가 후 자치법규 특성과 제약요인 등을 분석해 '23년 이후 전체 자치법규 평가방향 설정(2월)
	○ 공공부문중 공직유관단체 외 행정기관의 공정채용 관련 사각지대 관리·감독 필요	○ '23.1.1일자 권익위에 설치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공정채용 기준' 마련(4월) 및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채용관련 지침 반영 이행 점검(~12월)
II-1-①	○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지연	○ 조속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언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유관 단체 등을 상대로 입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지속(~'23년 상반기)
	○ 고충민원 사후관리 관련 보고 일정 지연	○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업무의 계획 대비 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점검(연중)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Ⅱ-1-②	○ 사인간의 권리관계, 고충민원 제기 또는 각 부처 등에서 직접처리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성격의 민원으로 인하여 상담관들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상담해결률 목표 미달	○ 사인간의 권리관계 관련은 표준답변안을 마련하여 상담관들에게 공유(5월) ○ 직접처리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성격의 민원은 일반상담총괄과에서 전담하여 현장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2월)
Ⅱ-1-③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 제도화 추진은 미흡 ○ 현행 행정심판법의 내용만으로는 행정심판 당사자의 심리 지연·방해행위 대응에 한계 존재	○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특별행정심판의 단계적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안 법제화 추진(12월) ○ '심리자료 제출 의무화' 등 행정심판법 개정안 법제화 추진(12월)
Ⅱ-2-①	○ 인력상 한계로 국민생각함 안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미흡, 국민안전에 대한 조회 수는 많지만 댓글 등 참여는 부족한 실정 ○ 국민생각함 메인 메뉴에 국민생각함 이용자를 위한 이용방법 소개나 국민생각함 안내에 대한 설명 부족	○ 국민생각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의무 및 우수안전에 대한 추천 권한 부여(6월) ○ 메인 메뉴에 '소개 창구'를 설치하고, 주요기능, 활용방법 및 국민생각함 활용 주요사례 등을 게시(6월)
Ⅱ-2-②	○ 빅데이터 기반 행정 및 분석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기술, 정책적 판단, 시각화 능력 등을 겸비한 민원분석 전문가 부재 ○ 민원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도출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개선에 활용하는 노력 필요	○ 위원회 전략방향 및 정책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채용 추진(4월) ○ 우수 분석사례 민원빅데이터 누리집에 게시, 관계 부처 제공 및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 공유(12월)
Ⅱ-2-③	○ 화재, 추락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산불·침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 필요 ○ 현행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용범위는 행정기관만 해당되고 공공기관은 제외되어, 국민권익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 필요	○ 국민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연중) ○ 적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연중)